「구미시 소상공인 로컬팩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가. 단순 디자인·시설개선이 아닌 구미의 자원, 문화, 사람, 스토리 등 지역성을 제품과 공간에 구현하여 차별화된 로컬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임.

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구미시 소상공인 로컬팩 지원사업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1) 추진근거

가)「지방자치법」제117조

나)「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제6조

다)「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2조

(2) 필요성

소상공인 로컬팩 지원사업 도입 초창기부터 사업을 운영해 온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관련 경험과 운영체계를 보유하고 있어 사업의 연속성과 운영 효율성 확보를 위해 기존 운영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함.

다. 위탁 사무 내용 : 『구미시 소상공인 로컬팩 지원사업』 업무 전반

라. 위탁기관 :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구미시 산동읍 첨단기업1로 17)

마. 위탁기간 : 2027. 1. ~ 2027. 12. (1년간)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800백만원(시비)

(단위 : 백만원)

계	사업비	간접비	인건비	비고
800	570.2	69.8	160	

사.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 일자리경제과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의결('26. 9. 28.)

4. 부서의견

○ 로컬팩 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 제117조

(2)「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3)「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4)「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2조

나. 예산조치 : 2027년도 예산 편성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구미의 차별화된 로컬 브랜드 육성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관련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 검토 결과,

-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사업 도입 등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해 온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전문 인력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어 본 위탁 사무를 수행하기에 적정한 기관으로 판단됨.

- 특히 단순 시설개선에서 벗어나 로컬패키지형(제품 중심형)과 로컬플레이스형(공간 확장형)으로 세분화하여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1:1 멘토링, 역량 강화 교육,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 개척까지 종합적으로 연계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및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타 부서 및 유사 지원사업과의 사무 및 지원 대상 중복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여 한정된 재정이 누수 없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